

D'LIGHT



법무법인 디라이트

NFT의 가상자산 관련 위험요소 점검

2021. 12. 14.

변호사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CONTENTS

- 01. NFT에 대한 논의현황
- 02. NFT는 가상자산인가?
- 03. NFT의 가상자산 관련 위험요소
- 04. NFT에 대한 기타 위험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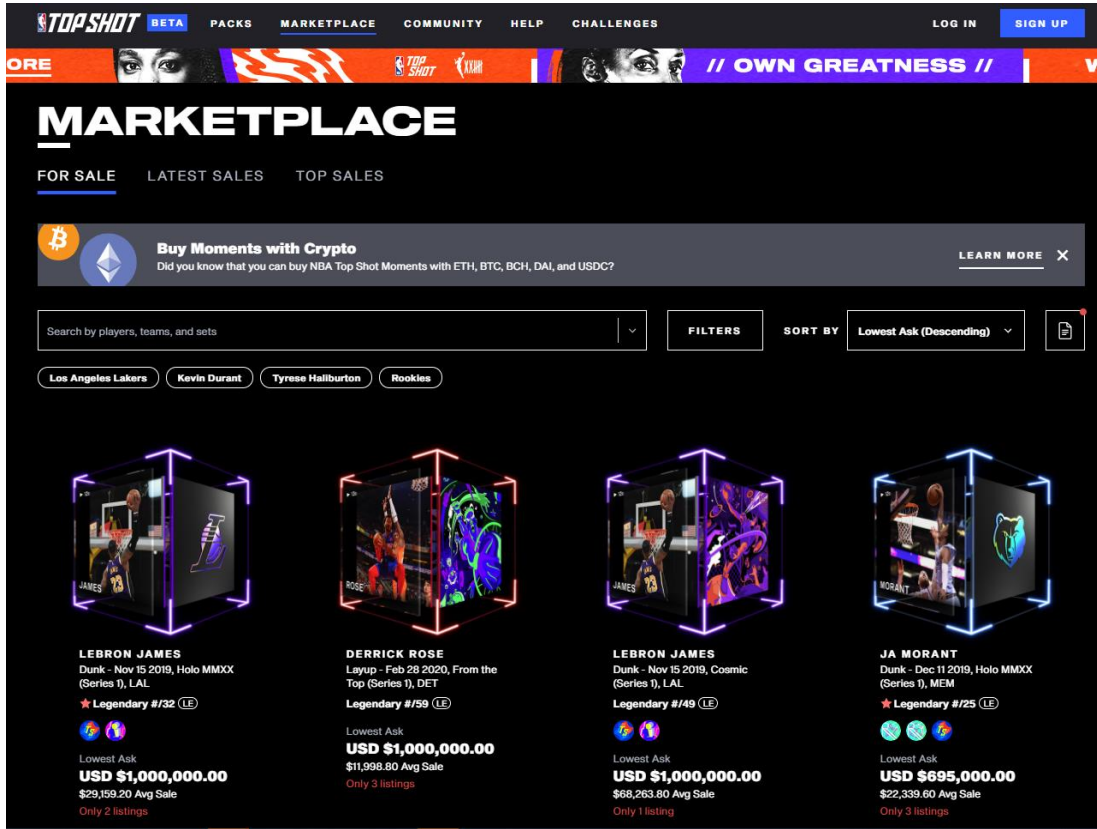
- fungible vs. non-fungible?

```
contract ERC721 is ERC165, IERC721 {  
    // ... 종략 ...  
  
    function _mint(address to, uint256 tokenId) internal {  
        require(to != address(0), "ERC721: mint to the zero address");  
        require(!_exists(tokenId), "ERC721: token already minted");  
  
        _tokenOwner[tokenId] = to;          // 소유권 부여  
        _ownedTokensCount[to].increment(); // 토큰 수량 +1  
  
        emit Transfer(address(0), to, tokenId);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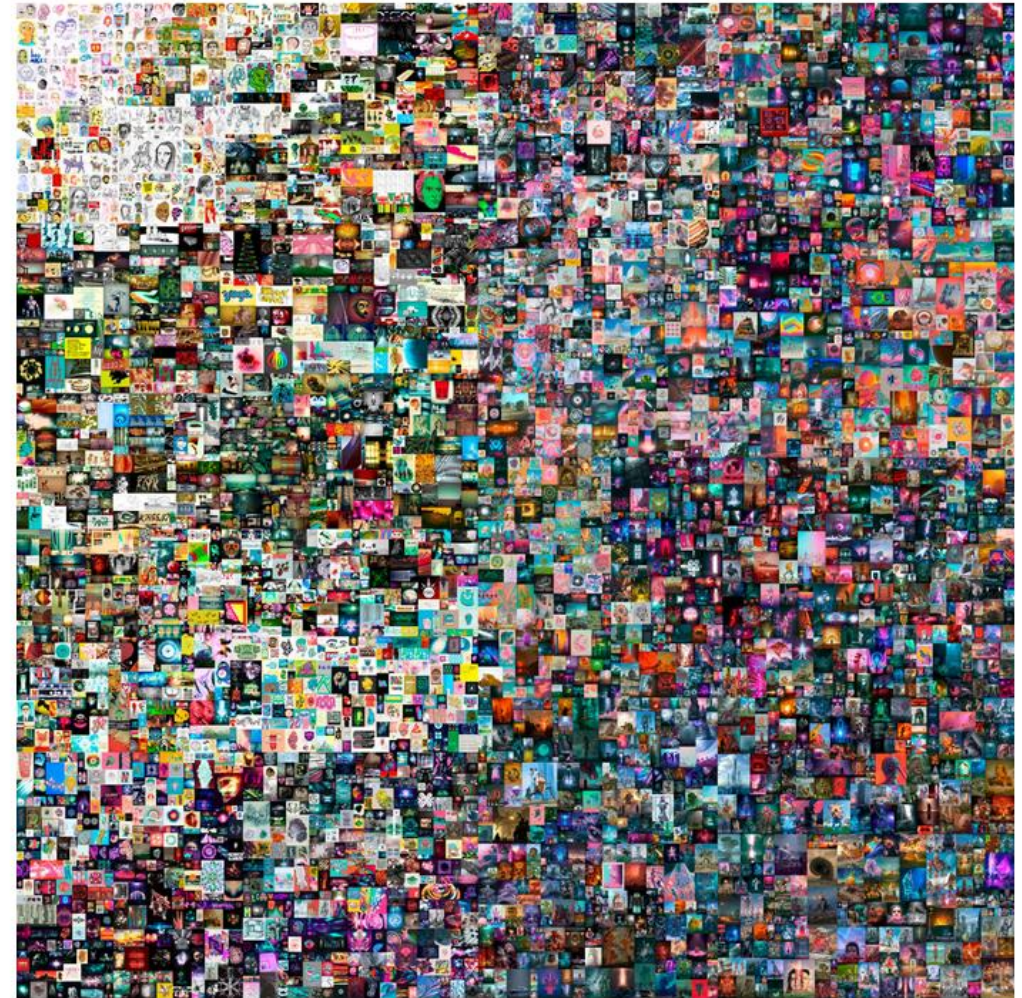
- NFT를 발행하는 트랜잭션에서 발행 주소(to)와 토큰 id(tokenID)를 부여
- Mint, Transfer, burn 등 거래 및 이전에 있어서 일반 디지털자산과 크게 차이가 없음
- NFT는 고유한 인식값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자산의 형태를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개념에 불과

01. NFT에 대한 논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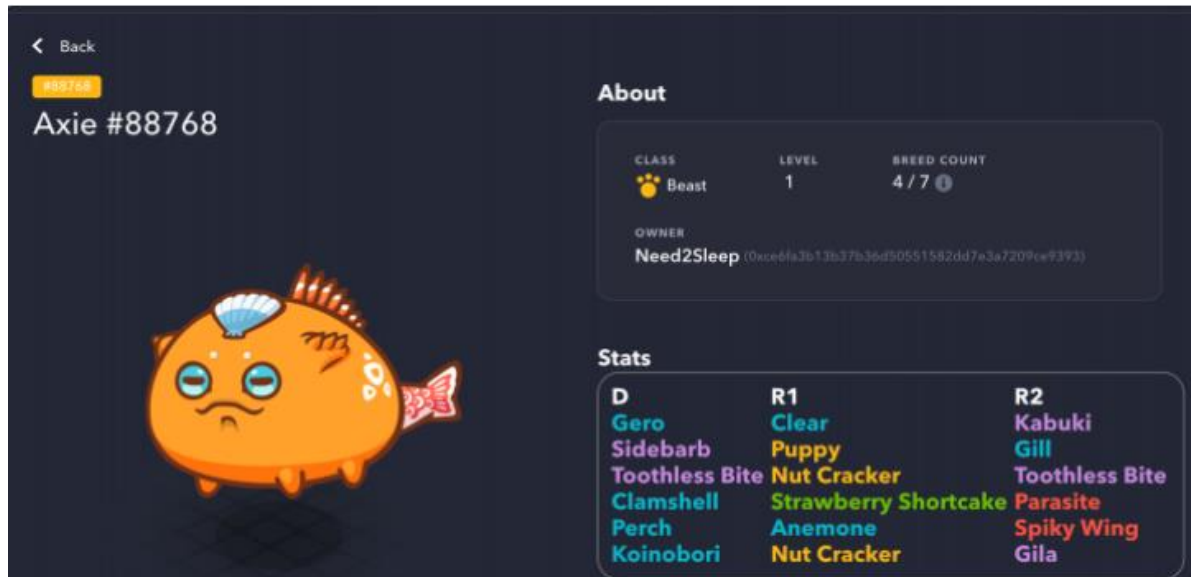
NFT의 사용 예시 - 수집품



출처 : nbatopsh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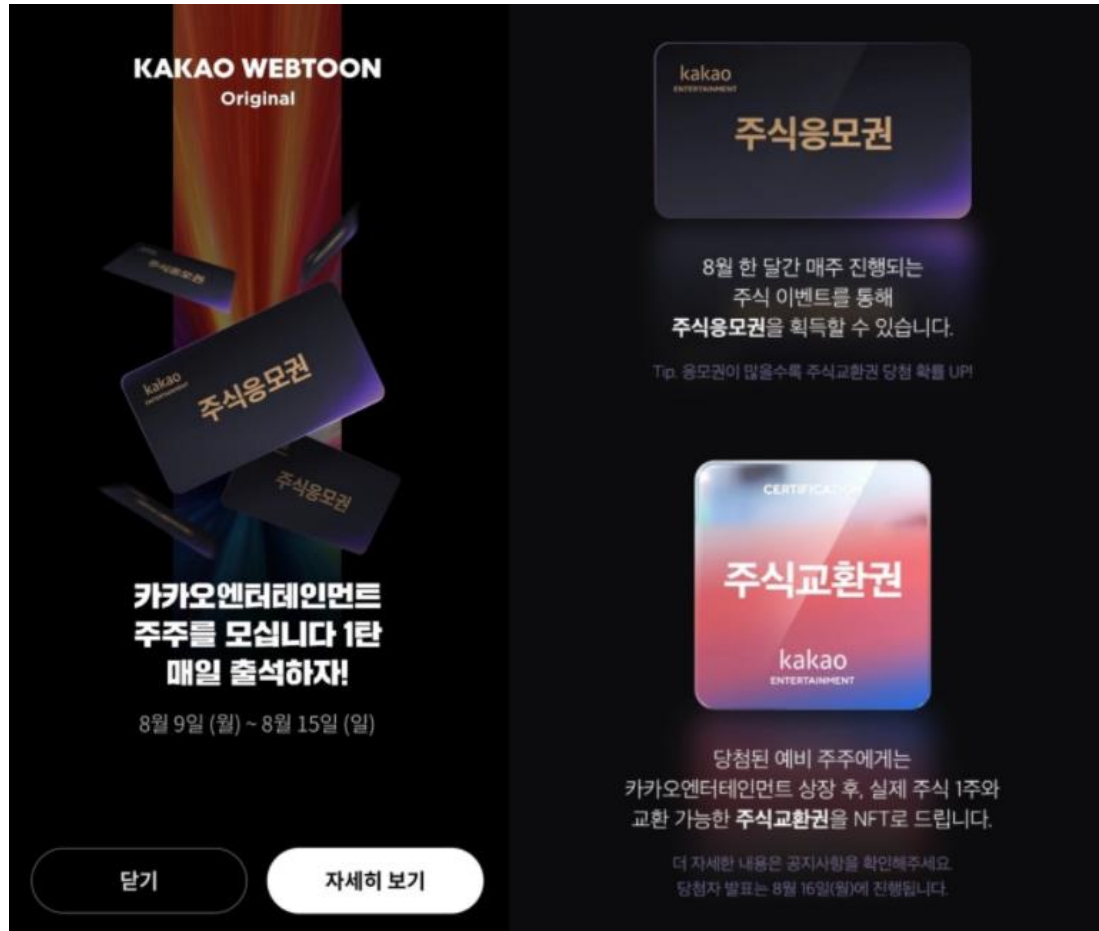
출처 : <https://www.theverge.com/2021/3/11/22325054/beeple-christies-nft-sale-cost-everydays-69-million>



출처 : <https://whitepaper.axieinfinity.com/gameplay/breeding>



출처 : <https://medium.com/sandbox-game/>



KAKAO WEBTOON Original

주식응모권

8월 한 달간 매주 진행되는
주식 이벤트를 통해
주식응모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Tip: 응모권이 많을수록 주식교환권 당첨 확률 UP!

주식교환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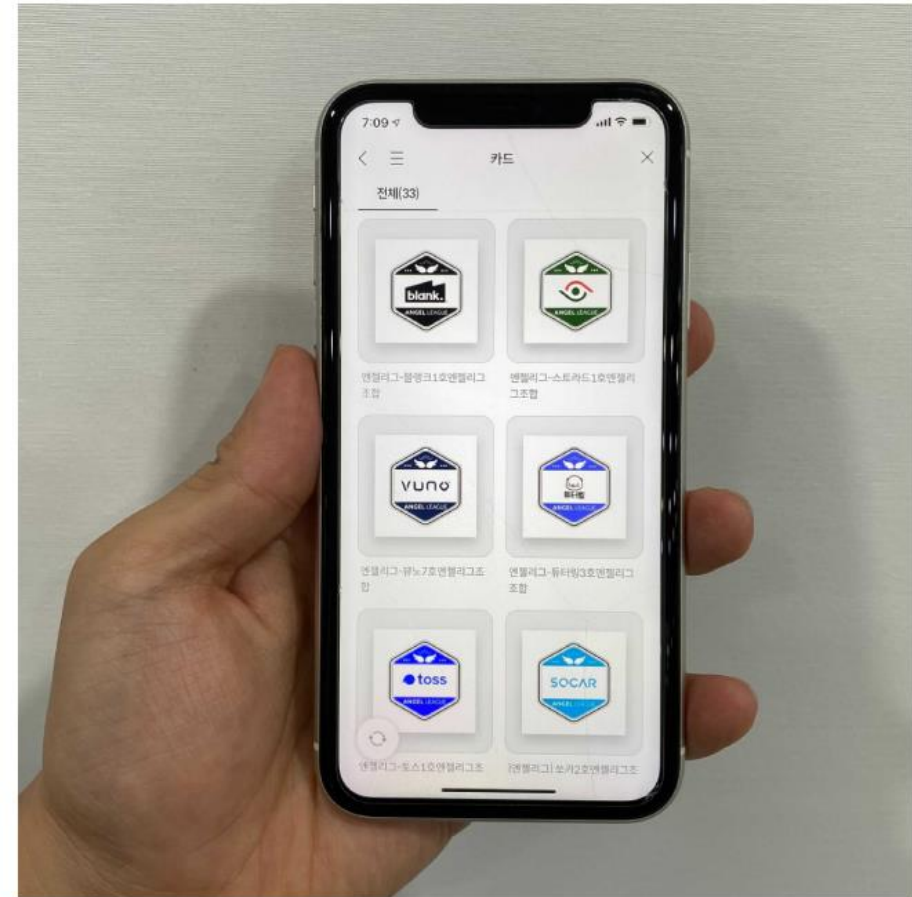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주주를 모십니다 1탄
매일 출석하자!**

8월 9일 (월) ~ 8월 15일 (일)

닫기 자세히 보기

당첨된 예비 주주에게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상장 후, 실제 주식 1주와
교환 가능한 **주식교환권**을 NFT로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당첨자 발표는 8월 16일(월)에 진행됩니다.



엔젤리그 조합 NFT (사진 캡박스)

출처 : <https://news.mtn.co.kr/v/2021081215445390794>

- 2021. 10. 28. VA & VASP Guidance Update

53. Digital assets that are unique, rather than interchangeable, and that are in practice used as collectibles rather than as payment or investment instruments, can be referred to as a non-fungible tokens (NFT) or crypto-collectibles. Such assets, depending on their characteristics, are generally not considered to be VAs under the FATF definition. However,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nature of the NFT and its function in practice and not what terminology or marketing terms are used. This is because the FATF Standards may cover them, regardless of the terminology. Some NFTs that on their face do not appear to constitute VAs may fall under the VA definition if they are to be used for payment or investment purposes in practice. Other NFTs are digital representations of other financial assets already covered by the FATF Standards. Such assets are therefore excluded from the FATF definition of VA, but would be covered by the FATF Standards as that type of financial asset.¹⁷ Given that the VA space is rapidly evolving, the functional approach is particularly relevant in the context of NFTs and other similar digital assets. Countries should therefore consider the application of the FATF Standards to NFTs on a case-by-case basis.

- NFT는 수집 가치가 있어(collectible)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지만, 결제나 투자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음

- 2018. 10. FATF Recommendations – General Glossary Update

Virtual Asset	A virtual asset is a 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 that can be digitally traded, or transferred, and can be used for payment or investment purposes. Virtual assets do not include digital representations of fiat currencies, securities and other financial assets that are already covered elsewhere in the FATF Recommendations.
---------------	--

- 가상자산(Virtual Asset)을 정의함에 있어서 **사용의 목적(결제나 투자)**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 FATF의 목적(자금세탁방지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합당한 정의
- FATF Guidance에서 NFT에 관한 내용의 추가는 **기존 FATF의 입장을 NFT에 그대로 적용한 형태**
 - NFT의 거래액이 커지면서 NFT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다루었을 뿐, 구체적인 입장 제시 x

- FATF의 입장과 동일한 입장 (2021. 11. 23.)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이 아니며, 다만 결제 · 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

“기사 제목 등에서 “NFT는 가상자산”이라고 단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기사 내용 중 인용된 부분과 같이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개별 사안별로 봤을 때 일부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NFT는 다양한 양태로 발전하고 있어 일반화할 경우 불필요한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의 입장과 모순되는 부분 존재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의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자채권

2)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한 상품권 중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되어 사용되는 상품권

3) 그 밖에 1) 및 2)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스카이피플의 사례

등급분류보류 -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 본안소송

- 2021. 11. 본안소송에서 금융위의 사실조회 회신

- 기존의 불명확한 입장 재확인

- 게임물에서의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현행법상 사행성 인정될 가능성 높음

- 사행성 조성행위 요소가 없는 블록체인 게임을 출시할 경우 등급분류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는 정도의 논의만 이루어지는중

- **해외에서만 서비스중**이어서 업계의 고충 큰 상황. **메타버스와의 구분 기준 모호성**으로 더욱 대응 어려워짐

스카이피플 NFT 활용 게임 '파이브스타즈', 게임위에 집행정지 가처분 승소

도예리 기자 yeri.do@ | 2021-06-24 13:58:08



출처 : <https://decenter.kr/NewsView/22NRF836UB>

- 향후 NFT의 가상자산 여부에 대한 법령 정비 가능성
 -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유예로 인하여 법령을 정비할 시간 확보한 상황
 - NFT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NFT의 요건을 제시할 가능성 있음
 - 시행령 및 고시를 통하여 NFT의 일반적인 요건을 정해놓고 case by case로 판단할 가능성 있음
- NFT의 요건을 정한다면, 어떤 요건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 “거래의 제한”을 요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음
 - “결제”나 “투자”목적이라는 사용목적에 기준으로 구분할 경우, 기존 Utility Token과의 차이에 대한 논의 발생 가능성 존재
 - “가상자산”의 정의규정을 근거로 예외 적용 가능한가? ex. 전자문서에 해당하여 증표성 거부 등

- 가상자산의 발행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에서 제외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 3)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
-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 NFT의 가상자산 여부와 무관하게 발행의 경우에는 위험요소 ↓
- NFT의 발행을 지원하는 국내 플랫폼 존재 (플러그인 방식 지갑 등과 연동)
- 사업자가 직접 발행해서 원저작물의 권리자에게 NFT를 이전해주는 경우는?

-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제 없음
-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의 매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 가능성 존재

→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NFT의 판매 이후 거래를 제한하는 형태로 사업모델 다수 구현**

ex) NFT는 디지털 아트 작품에 대한 양수도계약 체결을 통해 디지털 아트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소유권 증명서로서 기능(발행되는 NFT는 이전이 제한, 추후 거래기능 오픈 예정)

서비스절차: 작가선정 – 판매위탁 – 판매계약 체결 – NFT 발행

-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에는 BTC, ETH 등의 가상자산으로 판매중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들과 다른 양상의 사업 전개중
 - 일부 가상자산거래소를 제외하고 소규모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의 형태로 변질될 가능성 존재

- NFT의 거래 대가로 주로 일반 가상자산이 활용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
- NFT의 가상자산 여부와 무관하게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교환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 가능성 존재
 - Smart Contract로 NFT의 거래를 구현하는 경우에는? FATF의 입장은 점차 부정적
 - NFT를 DeFi에 결합시키는 경우에는?
- NFT의 거래대가로 원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 그러나 은행의 실사, 전자금융거래법 이슈 등의 또다른 문제 발생 가능성 있음

- 가상자산 플랫폼의 원화결제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 카드결제는?
 - PG사를 통한 결제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결제 및 정산은 OK)
 - 계좌이체는? 은행의 EDD/CDD 등의 실사 및 이에 따른 계좌동결 이슈
- 특정금융정보법유예기간 도과(2021. 9. 25.) 이후 원화입출금은 더욱 제한됨
 - 벌집계좌 사용 불가(실명확인입출금계정 사용 의무화)
- NFT 플랫폼의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이슈 존재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vs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vs 결제대금예치업(ESCROW)

(1) 플랫폼이 중간에서 재화의 구입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할 경우

(2)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PG업으로 보는 사례 등 case by case로 판단

- 미술품을 조각판매하는 형태의 사업모델

- NFT나 블록체인과 무관한 형태의 활성화된 사업모델 존재

- 미술품을 공동구매하는 형태로 조각판매

- 공동구매란 민법상 “공유”의 형태로 공동소유하는 것을 의미 →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형태로 운영중

- **옥션과 은행이 협업하여 진행한 유사한 사례**

- 금융당국이 투자계약증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검토요구 → 서비스 중단

- 투자계약증권: ① 투자자의 이익획득 목적이 있을 것, ② 금전 등의 투자가 있을 것, ③ 주로 타인이 수행하는 공동사항에 투자할 것, ④ 원본까지만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⑤ 지분증권, 채무증권, 집합투자증권 등 정형적인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비정형증권일 것

- 미국법상 투자계약(Invest Agreement), Howey Test 기준을 2007년에 차용한 규정
but 국내에서는 사문화된 규정

감사합니다

www.dlightlaw.com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김 동 환

02 2051 1870
010 9090 6691
dhk@dlightlaw.com

※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준비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안을 전제로 하는 법률의견이나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저희 법무법인의 공식의견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대한 저작권 등의 권리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에게 있으므로 저희 법무법인의 사전 동의 없이 사용, 복제, 활용 및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습니다. 자료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상기 발표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